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매뉴얼

2025. 4

목 차

I.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1
II.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	3
III. 대응요령	8
1.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8
2. 주요 서비스제공자의 신고페이지 URL	9
3. 조정신청	9
4. 조정신청 방법	10
5. 민·형사상 소 제기	10

I.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II.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

□ “명예”의 개념

-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

□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3쪽]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고]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호)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6쪽].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고].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 사이버 모욕죄 사례 및 QnA

-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똥똥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 Q.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A.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 Q.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언제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A.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예를 들면 A가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또한 A가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 “저 아이는 지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거야.”라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III. 대응 요령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

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

□ <주요 서비스제공자의 신고페이지 URL>

- 네이버: <https://right.naver.com/>
- 다음: <https://cs.daum.net/redbell/top.html>
- 구글: <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hl=ko>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KISO 종합신고센터
: <https://report.kiso.or.kr/about/>
- 대부분 커뮤니티는 권리침해 게시글에 대한 삭제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 소형 커뮤니티의 경우, 관리자 이메일로, 1) 본인 확인 서류, 2) 신고 내용(화면 캡처 혹은 URL 등 증거 포함) 및 관련 서류, 3)연락 받을 방법 등을 포함하여 권리침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5조제1항].

□ 조정신청 방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분쟁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를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요건 확인을 거쳐 접수됩니다.
- 방문·우편제출 주소 : (우06619)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8(서초동, 서초동아타워), 5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
-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https://remedy.kocsc.or.kr/>

□ 민·형사상 소제기

[형사: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특정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중, 치과의원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에 대한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서, 비방의 목적으로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의사에 대하여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법원 입장)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1.29.선고 2012도 10392판결 참조)

[형사: 업무방해]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치과의료기관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에 의하여 운영되고, 보조인력의 구인은 치과의료기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 커뮤니티 내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하여 특정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사에 대한 사실적시로 인하여 치과의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구인난을 겪게 될 위험성 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특정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내용이 특정 의료기관과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면,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는 글 작성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액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 및 소송 대상]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글 게시자가 될 것입니다.
- 다만, 특정 커뮤니티 운영자가 애초에 치과의료기관의 평가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치과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글게시자와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고소 및 소송 대상자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